



油価管理制度 改善의 意義

李 會 晟

〈韓國動力資源研究所, 經博〉

石油製品価格이 4월 19일을 기해 다시 引上되었다. 이번 인상을 계기로 価格決定의 基本方式이 일부 改編되었으며, 제품의 相對価格体系도 개편되었다. 가격제도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合理的 価格制度의 설정을 위한 노력에 보탬이 될 것이다. 本稿의 焦點은 개편된 価格制度가 舊制度와 어떻게 비교되며 앞으로 어떠한 운영의 효과를 초래하게 될까를 분석,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석유제품 가격의 주구성요소인 原油費와 精製費의 策定基準과 方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原 油 費

原油費가 石油製品価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이상으로서 매우 높다. 이와같이 높은 비중 때문에 원유비가 精油會社의 利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영향은 79년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OPEC(석유수출국기구) 原油價의 多元化때문에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사우디 石油의 生産會社인 아람코의 特殊會社인 엑슨, 소칼, 텍사코, 모빌은 사우디의 저렴한 原油價때문에 소위 아람코 優位(Aramco advantage)를 향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所要原油 全量을 칼텍스(소칼과 텍사코의 합작 회사)를 통해 사우디로 부터 공급받고 있는 湖南精油의 원유비는 쿠웨이트산이나 이란산 原油를 매입하고 있는 他精油會社에 비해 4~8 달러정도 저렴하다.

政府는 79년부터 原油費의 平準化 政策을 실시하여 왔다. 79년의 경우 도입원유중 最高価原油에 引上予想분을 追加한 금액을 基準原油費

로 책정한 후 이것과 実導入原油價와의 差額을 通關時 石油事業基金으로 징수하였다. 이와같은 평준화방법은 기준원유비를 실도입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製品価格의 暴騰을 초래 하곤 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80년 정부는 基準原油費의 정의를 총도입원유의 平均複合單價로 변경하였다. 원유비평준화 자금은 각 정유회사가 통관시 납부하는 배럴당 일정액의 石油事業基金과 평균부합단가 이하로 도입하는 정유회사로부터 그 差額을 징수하는 석유사업 기금으로 조성되었다. 정부의 방침은 低價原油의 도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석유사업 기금의 精算時期, 方法 등 결차상의 문제로 差額基金의 징수와 '인센티브'의 부여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露呈시켜 왔다.

이번 석유인상을 계기로 원유비평준화 방법이 다시 변경되었다. 最低價原油導入社인 湖南精油의 평균원유도입가가 基準原油費로 책정되었으며, 평준화자금의 조성을 위해 定額石油事業基金은 계속 유지하는 반면 差額基金은 폐지되었다. 差額基金의 폐지는 표면상으로는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을 제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액 기금은 배럴당 3.50달러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原油의 國內平均複合單價와 基準原油價와의 差額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곧 석유사업 기금의 용도가 原油費平準化라는 한가지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舊制度下에서 석유사업 기금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基金用途의单一化는 제도운영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저가원유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는 이번의 제

도 혁신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정유회사의 이윤극대화가 精製費의 節減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原油部門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의 부여여부는 政策的으로 결정될 사항이다. 이것은 원유비 평준화 실시가 市場經濟의 純粹原理를 반영한다고 보다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政策的意志를 반영하는 것과 같다. 시장경제의 원칙으로만 본다면, 低價原油를 사용하는 정유공장의 이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타공장보다 많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도에도 마찬가지이다. 계산상의 기준원유가는 저가 원유사의 가격이지만 실질기준원유가는 国內複合單價이기 때문에, 원유부문이 윤의 相對的 差異는 발생할수가 있다. 다만 어느 정도 발생해야 적합한가는 정책적인 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현재도가 갖는 의미는 精油會社 利潤創出의 소지를 原油이외의 부문으로 一元化시켰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精製費 및 利潤

基準精製費와 利潤의 수준도 대폭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기준경제비가 정유 3社(湖油, 油公, 京仁)의 精製費実績을 加重平均하여 算定되었다. 그러나 이번 유가조정을 계기로 双竜과 極東의 경제비실적도 추가됨으로써, 기준경제비는 国내의 모든 정유회사의 平均費用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결과 기준경제비는 배럴당 1천 6백 48원에서 3천 4백 90원으로 대폭 上向조정되었다. 그러나 引上額 1천 8백 42원의 대부분(82%)은 유전스 利子 및 換差損 등 金融關係의 間接費用임을 注視할 필요가 있다. 구제 도하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石油事業基金에 의해 처리되었다. 석유사업기금 운영의 단순화와 병행하여 금융간접비용은 기준경제비의 일부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生產과 販売에 직결된 費用은 배럴당 1천 6백 48원에서 3백 35원이 오른 배럴당 1천 9백 83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와같은 경제비는 외국의 경제비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에 있다. 基準精製費의 現實化는 바람직한 일이다. 정유회사는 앞으로 석유사업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運營效率性 提高를 통해서 적절한 報酬를 享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가조정의 획기적 변혁의 하나는 利潤概念의 公認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油公精油部門의 損益分歧點, 혹은 精油 3社의 平均損益分歧點에서 價格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유업에는 이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아닌 원칙하에서 가격이 조정되어 왔다. 이러한 기준이 가격정책 수행을 위한 하나의 行政的 方便일 수는 있어도 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合理的 施策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競爭的 상태에서의 市場價格은 投資資本의 機會費用에 해당하는 액수의 利潤을 포함하게 된다.) 가격책정에 있어서 이윤이 공개적으로 고려되었다는 것은 석유가격정책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利潤의 考慮가 반드시 消費者價格의 追加引上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손익분기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는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회수하려는 것이 투자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利潤concept의 導入은 지금까지 默示的으로 取得하던 이윤을 表面化, 顯在化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利潤을 公開的으로 고려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市場經濟의一面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製品別 價格

製品別 價格体系도 이번 油價調整을 契機로 크게 변화하여, 國際的 價格類型에 보다 접근하였다. 輕油와 重質燃料油의 가격차이는 과거의 배럴당 2.50달러에서 5.80달러로 크게 拡大, 外國의 배럴당 10.50달러에 보다 접근되었다.

우리나라의 重質燃料價格은 외국수준에 비해 아직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의 상향조정이 경질제품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별 가격체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수년내에 필요하게 될 重質油分解裝置에 대한 투자가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수 있다.

중질유분해장치의 설치는 石油需要의 輕質化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原油確保와 導入先多邊化를 보다 融通性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中東產油국들은 原油의 直接輸出을 줄이는 대신 石油製品 특히 수요가 빈약한 重質製品을 原油에 끼워서 強壳하려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의 원유확보를 위해서는 輸入重質製품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다 보면 그 주요대상이 重質原油가 된다. 이것은 地球에 남아 있는 석유자원이 輕質油보다는 重質原油로構成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입선의 다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重質油分解裝置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덧붙여 특기할 사항은 低硫黃油의 價格이 新設되었다는 점이다. 公害發生者負担原則에 의거 低硫黃油의 가격은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공해방지비용의 일부가 消費者價格에 転嫁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것은 公害방지를 위한 사회적비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結 論

우리나라의 石油價格政策은 분명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石油事業基金의 一元화와 精製費 및 利潤의 現實化는 市場經濟原理가 우리의 石油事業에도 보다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한 價格引上의 実務的인 업무를 精油業界 자체에 위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경제의 전반적 운용을 民間主導型으로 전환시키려는 경제정책의 기조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것이 석유가격의 自由放任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원유가평준화는 계속될 것이고, 기준정제비 결정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윤수준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에는 규제력을 발동할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즉 自己資本에 대한 稅後利潤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부는 이익금의 용도를 지

정, 제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윤제한이 쉽게 이루어 질 수는 없다. 最高價格制度와 利潤規制制度가 병행될 때, 기업은 생산비용을 확대시킴으로서 초파이윤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굴곡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價格制度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消費者的 負担이 부당하게 증가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가격을 책정할 때 제품需要者와 供給者의 市場的相互反応을 보다 많이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은 수요자인 石油化学業体와 공급자인 精油業体가 價格協商을 전개하여 타결하고, 產業用主燃料인 벙커C油의 가격은 주요수요자인 韓電과 시멘트업체가 精油業체와 가격을 협상,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需要者를 대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프타, 벙커C油, 또는 輕油와 같이 수요자가 小數이고, 大型 同質일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價格決定에 직접 참여케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정부의 價格監視機能은 계속되어야 한다.

石油價格運動制는合理的인 제도이다. 油價運動이 『피어나는 景氣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다. 油價를 抑制할 때 景氣가 好轉된다는 論理는 성립될 수 없다. 오히려 油價를 抑制하면, 이를 위한 財源의 조달때문에 경기는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인상요인을 누적시키기 때문에 인상폭은 확대되어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유가연동제 하에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最少化될 것이다. 가격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석유수요자는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石油價格은 에너지가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政府와 民間部門은 石油價格의合理的策定을 위해 間斷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